

# 서 면 답 변 서

결의위원	신 교 선위원	소 속	평 창 군 의 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 재 무 과 장 )	일 자	질의 : 2001년 12월 10일 답변 : 2001년 12월 10일
회 의	제9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예결특위		
<p><b>【 질의요지 】</b></p> <p>0 수질개선부담금 2002년도 세입예산 편성 산출근거</p>			
<p><b>【 답변요지 】</b></p> <p>0 수질개선부담금 산출근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 거 : 먹는물관리법 제28조</li> <li>- 대상업소 : 해태음료</li> <li>- 내 용 :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 영업자로부터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00분의 2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·징수</li> <li>· 판매가액의 100분의20중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10/100은 징수교부금 ⇒ 허가한 도수입</li> <li>2) 90/100은 수질개선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⇒ 45/100은 환경부</li> <li>⇒ 45/100은 취수정이 위치한 시·군에 교부</li> </ul> </li> </ol> </li> <li>· 2002년세입 산출근거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총부담금예상액 : 630,000,000원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⇒ 징수교부금(도) : 63,000,000원(10%)</li> <li>⇒ 수질개선부담금 : 환경부 → 283,500,000원(45%)</li> <li style="padding-left: 40px;">평창군 → 283,500,000원(45%)</li> </ul> </li> </ol> 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2002년 당초예산 계상시는 당초 45/100인 세율을 세율 인하에 따른 법개정중에 있으므로 40/100으로 하향조정하여 산정한 부담금임 (630,000,000원 X 40/100 = 252,000,000원 )</p>			